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협약서

한국섬유산업연합회(이하, “공동훈련센터”라 한다)와 _____(이하, “협약기업”이라 한다)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이하 “컨소시엄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컨소시엄 사업에 관한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관의 역할) ① 공동훈련센터는 관련 법령 및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협약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직무분석, 재직근로자의 교육훈련 수요조사, 교육훈련 과정 개발 및 운영 등 직업능력개발 지원
2. 협약기업 원활한 인력공급을 위한 채용예정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과정 개발·운영 등 지원
3. 그 밖에 협약기업의 체계적인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약기업은 공동훈련센터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에 적극 협조하며, 컨소시엄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재직근로자의 교육훈련 참여에 적극 노력한다.

제3조(훈련비용에 관한 약정) ① (사업주훈련환급방식) 협약기업은 공동훈련센터가 컨소시엄 사업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비용은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이 경우 협약기업은 공동훈련센터가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비용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것에 동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약정은 협약기업이 명시적인 해지에 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본 협약서의 효력이 유효한 기간까지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지원한도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른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에 해당하는 협약기업 : 100분의 ____
2. 1호에 해당하지 않는 협약기업 : 100분의 ____

③ 공동훈련센터는 컨소시엄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면서 규정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기업 또는 근로자에게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1. 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 지원금만으로는 교육훈련실시가 어려운 경우
2. 훈련생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교육훈련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훈련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경우

제4조(성실의무)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컨소시엄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컨소시엄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컨소시엄 사업 종료이전에도 협약기업이 1년간 연속하여 컨소시엄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는 협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협약서 복사본 또는 스캔하여 전자문서(스캔본 파일)로 보관 가능)

202 년 월 일

(공동훈련센터)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대치동)

회 장 섬유센터 16층

이 상 윤 (인)

(참여기관)

주 소

대표자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협약기업 일반현황 1부

【 첨부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협약기업 일반 현황〉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협약기업 일반 현황					
회사명				대표자명	
주소 (본사)	우편번호()				
업태		업종		상시근로자수	
담당자	성 명			HRD부서명	
	전화번호	사무실:		FAX	
		휴대폰:			
	전자우편 주소			홈페이지 주소	
고용보험관리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 기타 사항 】					

※ 별첨 : 계산서 발행 안내문

【 별첨 】

계산서 발행

업체명	
계산서 담당자 이름	
전자계산서 받으실 분 E-mail	
담당자 연락처	
*첨부 : 사업자 등록증	

- * 거래처 등록시 사용되며, 등록된 이메일로 향후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행하는 모든 계산서가 발행되므로 교육받으시는 분 이메일이 아닌 해당팀(재무,회계)의 담당자 이메일을 기재해 주세요.
- * 계산서 담당자가 따로 없어 교육생이 받아야 하는 경우, 담당자 이름옆에 **교육생본인** 이라고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 경우, 교육신청 확인 후 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협약서' 및 협약기업 일반 현황 제출방법

1. 교육신청 시 협약서를 2부 작성, 날인하여 1부는 해당 기업에서 보관, 1부는 메일(violet@kofoti.or.kr) 또는 팩스(02-528-4070) 송부하여 협약을 체결, 원본은 교육 첫째 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 송부시 제출서류 : 협약서 사본, 협약기업 일반현황, 계산서 발행, 사업자등록증(계산서 담당자 메일주소 기입)
2. 협약기업 일반현황의'업태, 업종'란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등재사항을 기재해 주세요.
3. 고용보험 관리번호는 해당 기업 총무·인사팀에 문의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공란으로 두시면 연합회에서 조회 후, 기입)
 - * 근로복지공단 사이트 : http://www.kcomwel.or.kr/paym/insu/srch_idx.jsp

※문의처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인적자원실

- 협약체결 및 계산서 관련 : Tel)02-528-4039, Fax)02-528-4070
- 교육과정 신청 관련 : Tel)02-528-4039 / 4045